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0 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5호(2021.12.31.)로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93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10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도면 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같음함

[붙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A3, A4, A5, A6, A7, B1, B2, B3, B4, B5, B6, B7, B8, B9, C2, C3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계단 - 공동주택용지에는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2 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A3, A4, A5, A6, A7, B1, B2, B3, B4, B5, B6, B7, B8, B9, C2, C3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계단 - 공동주택용지에는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2 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변경없음)

4)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5)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6) 상업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7) 공공·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8)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계재생략)

나.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계재생략)